

UR妥結後의 韓國水産政策의 方向

김 경 호*

The Direction of the Fisheries Policy in Korea after the End of the Uruguay Round of Global Trade Talks

Kim, Kyoung - Ho

目 次	
I. 序 論	1. UR以後의 水産業
II. UR協商의 背景	2. 漁業構造改善과 水産政策의 方向
III. UR協商의 概要	VI. 結 語
IV. 開放化와 産業政策의 方向	參考文獻
V. 開放化와 水産業	Summary

I. 序 論

解放以後 49년동안 韓國經濟는 政治·經濟·社會的인 混亂과 挑戰등 國內外的인 環境要因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꺾임없이 發展을 경험하였다. 특히 1962년부터 실시된 經濟開發5個年計劃을 시발점으로하여 韓國經濟가 보여준 量的膨脹과 質的高度化와 더불어 經濟社會의 급격한 構造變動은 資本主義經濟의 發展史上에 그 例를 찾을 수 없다. 30여년이라는 短期間에 달성된 高度成長은 資本形成, 工業成長, 重化學工業化, 輸出額, GNP 등 중요한 巨視的經濟指標의 어느 것을 보아도 資本主義社會에서 가장 급격한 發展을 이룩한 셈이다. 先進國이 이룩한 일 칸적 경험에 비추어보면 世紀를 要하는 發展過程과 轉換過程을 韓國은 불과 30년이 채 되기도 전에 놀라운 속도로 경험하고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經濟發展過程은 다른 先進國의 歷史的經驗을 극도로 「壓縮」한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의미에서 소위 壓縮成長(compressed growth)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壓縮成長에 의한 경이적인 高度成長, 韓國의 經濟發展은 巨視的인 관점과 工業化라고 하는 측

* 釜山女子大學校 人文社會科學大學 經濟學科 教授

1) 經濟開發을 歷史的, 具體的으로 관찰하면 실로 다양한 類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先進國과 後進國의 經濟開發過程上的 차이는 前者가 內的, 自然的發展에 의한 소위 쿠즈넛츠(S, Kuznets)의 近代的成長(modern economic growth)의 과정을 長期間에 걸쳐 겪는데 반하여 後者는 그것을 지극히 短期間에 壓縮過程(Compressed process)을 통해서 이룩하였다는 의미에서 壓縮成長(Compressed growth)이라고 한다.

면에서 말한 것이며 그러한 발전추세는 各産業에 따라 동일하지 않다. 大企業의 발전을 중심으로 한 高度成長은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이룩하였는데 反하여 産業間의 不均衡發展을 결과하는 바가 되었다. 즉 급속한 工業化過程에서 近代化가 진전된 高生産性部門과 뒤떨어진 低生産性部門으로 經濟의 二重構造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低生産部門은 勞動生産性이 社會全體의 平均勞動生産性에 比하여 현저하게 낮은 부문을 말하며, 여기에는 中小企業, 流通部門, 農水産部門이 속한다. 이들 低生産性部門은 大企業의 高生産性部門에 比하여 매우 낮은 것이 그 특징이다. 이러한 産業部門間의 勞動生産性的 격차는 결국 所得隔差의 원인이 되어 生活水準의 격차를 낳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經濟의 二重構造가 勞動生産성과 所得水準의 격차를 낳고 이것이 더욱 二重構造를 심화시켜 양부문간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經濟의 國際化, 開放化에 있어서 國際競爭力이 劣惡한 低生産性部門은 同種의 外國商品에 의해서 國內市場을 지배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有效需要의 감소로 인한 國內市場基盤의 잠식은 결국 高生産性部門의 發展을 저해하게 된다는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다. 一國內의 各産業部門은 비록 그것이 高生産性部門과 低生産性部門으로 구분되어 併存하지만 가능한 한 國民經濟의 均衡의 發展을 위하여 經濟의 二重構造를 축소하여 生産力을 증강하고 經濟의 相互補完關係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低生産性部門의 生産性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劣位産業의 近代化란 이들 産業部門의 合理化 특히 效率化로 勞動生産성과 所得水準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급속한 工業化過程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水産業部門에서는 여러가지 問題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對策이 요청되게 되었다. 특히 UR協商이 타결되고 머지않아 전면적인 開放化가 기정사실화된 오늘날 각국의 水産物과 競爭하여 水産業이 存立·發展하기 위해서 韓國水産業의 近代化와 國際競爭力의 強化가 초미의 급선무가 되었다.

本論文에서는 UR協商이 타결된 현재 앞으로 직면하게 될 전면적인 自由化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여기에 UR協商의 경과와 內容 그 性格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水産業의 對應方向을 제시하기로 한다.

Ⅱ. UR協商의 背景

2차대전 이후 戰前의 쓰라린 경험과²⁾ 大戰後의 經濟를 부흥하기 위하여 世界經濟秩序는 美國의 主導하에 개편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IMF,³⁾ IBRD,⁴⁾ GATT⁵⁾라는 Bretton Woods體制로 結實되었다⁶⁾.

- 2) 第1次大戰後의 世界는 소련의 등장과 資本主義諸國의 대립, 美國의 진출 등으로 國際政治力學關係에 커다란 변동이 발생하였으나 여기에 1930년대의 大恐慌으로 인한 國際經濟의 破綻은 國際協力을 불가능하게 하고 독일, 이탈리아, 日本등 3국이 國際聯盟을 탈퇴함으로써 벨사이유(Versailles)體制는 붕괴되었다. 이로 인하여 각국은 軍備擴張에 의한 戰爭準備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 여기에 貿易戰爭, 外換戰爭이라는 위기적 국면을 맞이하게 되어 妥協에 실패한 결과 드디어 第2次大戰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 3) IMF는 國際通貨基金(International Monetary Fund)으로서 주로 戰後 각국의 國際去來上 발생한 短期資金을 취급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 4) IBRD는 國際復興開發銀行(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이며 世界銀行이라고도 한다. 주로 長期資金을 취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차대전 이후의 세계經濟는 IMF, IBRD, GATT의 三頭馬車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GATT는 1947年 12월에 참가국 23개국이 조인하고 1948年 1월에 발족한 이후 국제무역분야에 주요쟁점이 있을 때마다 多者間協商을 개최하였으며 지금까지 8차에 걸친 협상이 있었다. 1차에서 6차의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 1964~1967)에서는 先進國의 關稅率을 加重平의하여 35% 인하였다. 제7차 東京라운드(Tokyo Round, 1973~1979)에서는 關稅引下와 함께 非關稅障壁의 완화를 위한 11個의 多國間協定이 체결되었다. 케네디라운드의 關稅交渉은 종래의 2국간의 交渉方式에서 多國間의 一括引下方式을 채택하였다는 것 이외에 對象品目을 一次產品까지 포함시켰다는 것과 開發途上國의 주요 輸出品目에 대하여 貿易障壁의 완화, 그리고 非關稅障壁의 완화도 이루어졌다는 것 등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⁷⁾.

여기에 대해서 東京라운드(Tokyo Round)에서는⁸⁾ 調和引下方式(harmonization formula)을 채택하여 關稅率의 高低에 따라 그에 상응한 引下率을 적용시키는 方式을 취하였다. 그리고 非關稅障壁의 제거를 중요한 과제로 다루었을 뿐 아니라 開發途上國의 貿易上 特惠優待措置를 채택하여 一般特惠關稅(GSP)에 合法性을 부여하였다.

이상과 같이 GATT의 7차협상까지 타결이 되었으나 1980年代 初부터 美國의 經常收支赤字가 누적됨에 따라 美國을 위시한 先進國에서는 保護貿易政策을 채택하게 되고, 美國의 通商法 30條, 美國과 EC등의 反덤핑조치와 輸入制限措置등 多者間協定보다 雙務的 또는 一方的 措置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같이 國際貿易이 保護貿易主義의 경향을 띄게 됨에 따라 자연히 GATT를 중심으로 하는 多者間體制가 약화되었다. 여기에 美國은 比較優位가 있는 農産物과 서비스交易의 自由化와 投資措置, 그리고 知的所有權의 보호에 관한 國際的인 規範定立을 위하여 새로운 多者間貿易協商이 필요하게 되고 그 실현을 주장하여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새로운 多者間協商 추진논의는 1982年 11月 제네바에서 개최된 각료회의를 계기로 본격화되어 드디어 1986年 9月 남미의 우루과이에서 閣僚宣言을 보게 되고 여기에 제8차 GATT의 多者間貿易協商인 UR타결을 위한 협상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1986年 9월에 시작하여 93年 12月 15일에 타결될 때까지 장장 7年 3개월이 소요되었다.

-
- 5) GATT는 關稅 및 貿易을 위한 一般協定(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며 貿易과 履備擴大를 통한 世界經濟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1947年 12월에 成立된 GATT의 第1條에는 이미 自由無差別原則을 표방하고 있다.
 - 6) Bretton Woods體制는 IMF와 IBRD가 Bretton Woods에서 창설되었으므로 Bretton Woods Organization이라고 한다.
 - 7) 美國이 Kennedy Round를 주장한 것은 EEC와 EFTA등의 地域經濟統合體에 대응하고 특히 EEC共同關稅를 引下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 8) 東京라운드는 非關稅障壁을 포함한 貿易障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1973年에서 79년까지 6年間 계속되었다. 이것도 1975年 美通商法이 의회에 통과된 후에 협상이 급진전되었다. 즉 1978年 7月 서독 본에서 개최된 先進國頂上會談을 계기로 協商의 실마리를 풀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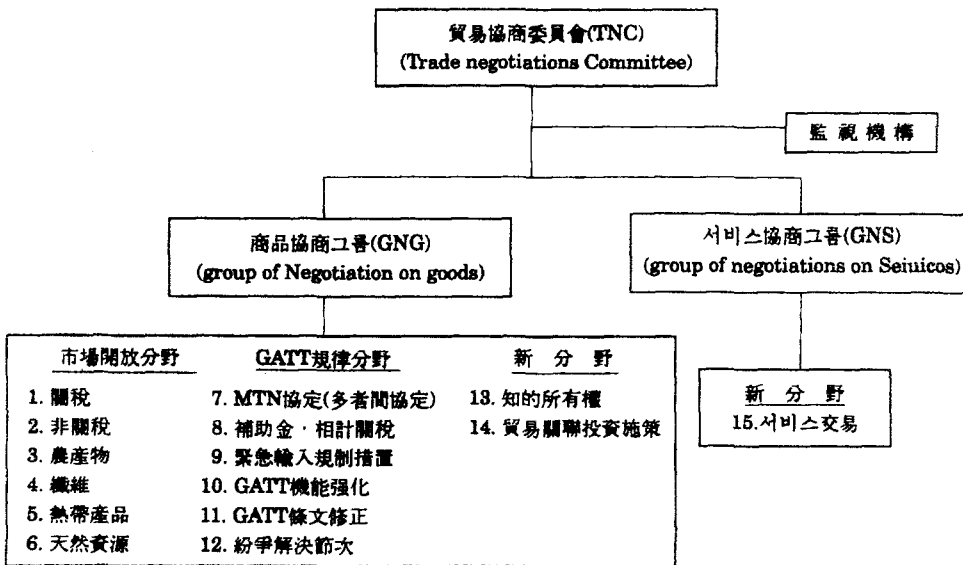
Ⅱ. UR協商의 概要

UR協商은 國際貿易의 확대를 위하여 各국의 市場開放, GATT體制 및 規律強化, 新分野에 대한 多者間 規範設定등 世界貿易秩序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美國을 위시한 先進國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7차에 걸친 多者間貿易協商 중에서 가장 야심적이고 성공적인 협상이 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즉 UR협상은 전통적인 關稅와 非關稅問題에 대하여 서비스의 自由貿易등 새로운 분야를 포함한 15개분야에 대하여 國際的規範을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그 歷史的 意義를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東京라운드(Tokyo Round)가 1973年에서 1979年까지 소요되었는데 東京라운드보다 훨씬 복잡하고 보다 포괄적인 UR협상의 타결에 7年 3개월이 소요된 것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이 나올 수 있다.

UR協商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美國과 EC와의 합의도출이 어려웠다는 점이었다. UR協商의 2年 경과후인 1988年 12月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각료급 중간평가위원회에서 15個협상과제중 이미 11個분야는 原則的인 合意를 얻은 상태에 있었다. 단지 農産物, 섬유류, 知的財産權과 세이프가드(safe guard)의⁹⁾ 네개의 분야에서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EC의 農産物 補助金에 관한 美國과의 대립은 UR협상 타결직전까지 첨예하게 되어 農産物協商이 UR協商을 좌우할 결과가 되었다.

여기에 UR協商이 이루어지는 體系와 논의된 議題들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즉 協商體系는 商品協商그룹과 서비스協商그룹으로 나누어진다. 貿易協商委員會는 이 두 協商그룹을 총괄하였다.

<表-1> UR協商體系



9) Safe guard는 輸入商品이 輸入國의 市場混亂, 産業의 위축을 초래할 경우 발동시킬 수 있는 緊急輸入制限權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2개국간 貿易의 留保權限으로서 GATT 제19조 特例로 인정된 自衛權의 一種이다.

UR安結後の 韓國水産政策의 方向

그리고 監視機構는 GATT에 위배되는 기존조치들을 동결·철폐해야 한다는 각료회의의 합의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7차에 걸친 GATT협상 중에서 UR은 가장 포괄적이고 복잡한 것으로서 商品과 서비스交易등 15個 協商議題를 채택하였다는 것은 기술한 바와 같다. 商品協商그룹은 市場開放分野, GATT規律分野, 新分野등으로 구분되어 총 14個 協商議題로 구성되어 있었다. 시장개방분야에서는 關稅引下와 非關稅障壁의 완화뿐 아니라 農産物·섬유·열대산품목·天然資源등에 관한 貿易自由化 문제가 다루어졌다. GATT규율분야에서는 東京라운드에 제정된 多者間協定, 補助金, 相計關稅,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명료화와 요건 및 기준강화문제, GATT조문 및 紛爭解決節次의 개선, GATT의 기능강화문제등이 논의되고 신분야에서는 知的所有權 보호와 貿易을 왜곡시키는 投資措置問題등이 협의되었다. 또한 서비스交易에 관한 문제는 商品協商그룹과는 별도로 서비스協商그룹에서 다루어졌으며 거기에서 국제적인 규범을 제정하고자 노력이 경주되었다.

IV. 開放化와 産業政策의 方向

UR協상이 안결되었으므로 앞으로 農水産物과 工産品, 서비스뿐만 아니라 資本·勞動등 生産要素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게 된다. GATT는 그러한 문제는 물론 각국의 補助金政策등 대내적인 産業政策까지도 규제하게 되며 국내의 企業이 외국의 企業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公正하게 競争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그러므로 産業 및 貿易政策은 이에 따라 변경되지 않을 수 없다.

1. 각종의 貿易障壁이 제거되거나 낮아지게 될 것이다. 關稅水準은 현재의 3分の 1수준이 될 것이며 先進國은 5%이내로 開發途上國등은 평균 10%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數量規制·技術·規格·稅關節次·輸入許可節次등 비관세조치도 점차적으로 철폐될 것이다.
2. 公正貿易體制가 강화된다. 이것은 국가간의 自由競争을 위해서 公正한 競争規則을 준수하자는 것이다. 즉 政府의 財政·金融·租稅등에 의한 補助金支給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政府의 보조금에 의한 인위적인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조치는 금지되어 명실공히 企業間的 公正한 競争만이 허용되게 된다. 그리고 덤핑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은 公正競争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3. 多者間貿易體制가 더욱 강화된다. 一方主義·雙務主義·地域主義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GATT의 機能과 體制改編을 통한 多國間的 協商과 監視가 강화된다. 貿易政策檢討制度(Trade Policy Review Mechanism)가 신설되어 각국의 貿易·産業政策에 관한 각종 制度·慣行등이 GATT에 보고되어 檢討·評價받게 된다. 따라서 GATT規定에 의한 모든 規制措置는 사전 또는 사후에 즉각적으로 GATT에 통보되고 모든 會員國에 알려지게 되어 있어 앞으로는 多者間規範에 합치되는 방향에서 公開行政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4. 世界貿易機構(WTO)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世界貿易機構(World Trade Organization)는 平和維持軍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즉 1995년에 설립될 WTO는 協定이 실효성있게 이행되도록 協定에 위배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감독하며 시정을 강요하고 協定違反國에는 제

재를 가하는 한편 무역분쟁에는 당사국들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할 판정을 내리게 된다. 지금까지 GATT 체제는 國際通商紛爭을 해결할 힘이 없었다. 그것은 무역분쟁국가들이 중재판정을 무시해도 속수무책이었던 것은 효율적인 제재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분쟁을 조정하지 못했고 그 결과 世界貿易環境을 악화시키는 것이 되었다. WTO는 이 점을 감안하여 분쟁 해결절차에 上訴制度 등 司法節次와 유사한 체제를 도입하고 분쟁당사국들 중 어느 한쪽이 최종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상대국이 무역보복을 가하도록 허용하였다. 이처럼 강화된 분쟁해결체제를 통해 WTO는 앞으로 전개될 自由競爭時代에서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WTO는 國家間, 地域블록間에 발생하게 될 通商마찰들을 해소시킴으로써 世界貿易秩序에 平和維持軍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 多者間規範이 정립된다. 여기에는 知的所有權과 서비스분야가 포함된다. 이와같이 GATT의 새로운 추세에 따라서 앞으로의 貿易 및 産業政策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국내산업의 國際競爭力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産業構造의 高度化가 시급하다. 여기에 産業改編은 生産力의 發展·競爭力의 강화를 위하여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국의 각종 貿易과 産業關聯制度, 政策, 慣行등을 國際規範에 적합하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 輸入許可制度, 技術規格, 認可制度, 數量規制, 稅關節次 등 현행 특별법상의 각종 제한제도를 점차적으로 철폐해 나가는 한편 이것을 GATT규정에 맞추어 운영해 나가야 한다.

3) 政府의 經濟運營方式에 있어서도 官主導에서 民間自律經濟運營에로의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 앞으로 政府의 補助金支援이 제약을 받게 되고 認·許可制度가 철폐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行政體制도 개편되어야 하며 民間의 自律經濟體制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無限競爭體制에 들입한 現在, 國際競爭力을 감안하면 각 企業은 스스로 競爭力을 배양하기 위하여 經濟關聯 全분야에 걸쳐서 전세계로부터의 情報蒐集, 판매시장확보, 生産性向上, 기술개발, 투자활동 등에 매진하고 經營技法도 선진화하여야 한다.

V. 開放化와 水産業

1. UR以後의 水産業

1948년 1월에 출범한 GATT의 목적은 貿易自由化에 의해서 국제무역을 확대하고 世界經濟의 發展을 촉진한다는 데 있었다. 이것을 위하여 각국에 대한 市場開放과 GATT규범강화 그리고 多者間協商을 大原則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기술한 바와 같다. 특히 貿易赤字가 누적되어 있는 美國은 比較優位가 있는 農水産物의 輸入自由化를 강하게 요구하여 왔으므로 앞으로 最小市場接近方法에 의한 猶豫期間이 지나면 價格이 저렴한 美國의 農水産物¹⁰⁾은 물론 中國을 위시한 東南亞各國의 農水産物이

10) 美國은 自國農業의 比較劣位를 理由로 1955년 이후 農産物의 GATT法 이탈을 선도하여 오다가 40年동안 政策的 支援에 의해서 國際競爭力을 강화시킴으로써 UR協商때는 農産物의 예외없는 GATT法 준수를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키는 등 冷嚴한 近隣窮乏化政策(Beggar-my-neighbor Policy)을 구사하여 왔다.

UR妥結後의 韓國水産政策의 方向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쌀시장개방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政府도 例外없는 關稅化의 原則에 따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것은 工産品의 比重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것마저 對美 輸出依存度가 높은 현재 經濟的 摩擦에서 오는 不利益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UR協商過程에서 우리측 대표는 韓國農業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특수성을 나열하여 農業을 완전히 自由貿易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그리하여 農産物 輸入國으로서 食糧安保등 非交易的機能을 위해서 農産物은 自由化對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補助政策도 유지되어야 할 뿐아니라 開途國에서는 輸入開放에 따르는 産業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猶豫期間과 移行期間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15個 협상과제 중에서 각국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다른 어느 협상분야보다도 가장 난항을 겪게 되었다. 한국측은 食糧安保와 農家所得 기여도가 큰 쌀·쇠고기·돼지고기·참깨·보리·유제품·고추·마늘·닭고기·감귤·대두·고구마·감자·양파·옥수수등 15個 品目을 제시하였으나 거부되고 말았다. 지금 협상그룹별 기본입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表-2> 主要協商그룹별 基本立場

그 룹 별	基 本 立 場
美國·캐인즈그룹	農産物交易의 完全自由化
EC	農業保護體系維持(漸進的 減縮)
韓國·日本·스위스등	一定水準의 農業保護 維持, 農業의 非交易的 機能 강조

UR協商過程에서 논의된 주요 협상의제는 (1) 輸入數量制限등 非關稅措置를 철폐하고 關稅化하는 문제, (2) 農水産物生産과 交易에 영향을 주는 보조정책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문제, (3) 농수산물수출보조를 감축하거나 철폐하는 문제, (4) 실질적으로 非關稅障壁으로 활용되고 있는 食品衛生 및 動·植物 검역기준을 국제기준에 합치운영하는 문제, (5) 이상 네가지 주요과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食糧安保·雇傭·環境保存등 農業의 非交易的機能(NTC: Non-Trade Concerns)의 반영문제, (6) 開途國優待問題등 6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각국간의 현저한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조정 제안된 것이 아래와 같다. 결국 美國의 주장이 관철되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表-3> 主要國의 減縮提案比較

韓 國	美 國	日 本
NTC필수품목과 生産調節대상품목은 開放에서 제외 1991년부터 7년간 開放, 開放時點에서 10년간 移行 國內補助: 30%감축(構造調整등 例外認定)	모든 輸入制限品目을 關稅化 '91년부터 10년간 移行(開途國 15年) 國內補助 75% 감축	基礎農産物과 生産調節 對象品目은 開放對象에서 제외 '86년부터 10년간 移行 國內補助 30% 감축

이상 農産物協商에서 논의된 것은 그대로 水産業에도 적용된다. UR協商이 타결된 현재 10년간이

라는 猶豫期間은 있지만 水産業保護를 위한 각종 支援의 축소와 水産物輸入의 自由化가 實現될 경우 構造的으로 經營規模가 영세하고 生産性이 낮아 國際競爭力이 극히 劣位에 있는 水産業과 關聯産業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것이고 따라서 漁民의 生計도 큰 위협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UR協定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인 것이다. 지금까지 韓國經濟의 發展은 世界的인 주목의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도 그 發展은 상당한 期間 계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협소한 國內市場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對外依存的 發展戰略을 추진한 결과 輸出主導的 經濟體質로 발전하여 對外貿易依存度는 8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美國市場의 의존도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貿易額으로 보면 韓國은 世界 12위가 되는 貿易國이며 UR에 참가한 110개국 중에서 EC, 美國, 日本, 캐나다, 홍콩에 이어 제6위를 차지한다. 이것은 韓國이 貿易增大를 통해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韓國經濟의 發展은 바로 貿易增大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韓國貿易의 급신장은 世界的인 自由貿易秩序아래서 가능했던 것이다. 貿易을 통해서 발전해 온 韓國이 農水産物の 輸入開放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世界貿易秩序의 새 규범이 될 UR協商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나라 經濟의 發展에 크게 기여한 世界貿易秩序라는 기반을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農水産業에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해서 UR協定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輸入開放에서 오는 타격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開放에 대응하여 外國水産物과 경쟁할 수 있는 漁業構造와 競爭力을 가진 水産業으로 육성하기 위한 政策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실 農水産物の 수입개방은 GATT가 발족한 1948年 1월에 예정된 것이고 가깝게는 貿易自由化長期計劃을 수립한 70年代 후반부터 計劃日程에 들어 있었으며 86年 9月 UR協商이 시작되면서부터 農水産物開放이 90年代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특히 韓國은 GATT의 규정에 따라 國際收支上의 이유로 輸入을 제한할 수 있는 제18조B國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수입제한을 할 수 없는 제11조국으로 이행하는 소위 BOP졸업국이 되었다. 그 결과 韓國이 97年 7月까지 農水産物の 잔존수입제한을 철폐하든가 GATT協定에 合法化 조치를 취하기로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은 開放·自由化反對를 운운할 때가 아니라 주어진 유예기간이후의 市場開放에 競爭力이 있는 農水産業의 體質改善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解放이후 지금까지 行政當局이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對策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增産一邊倒라는 短期的인 목적만을 추구하는 獨裁政權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나 政策的으로 큰 失策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강경하게 自由化를 주장한 美國의 關稅化도 輸入制限등의 모든 非關稅障壁을 철폐하고 內外價格差에 대응한 高率關稅를 점진적으로 引下하여 10年後에는 關稅를 제로(零) 수준으로 함으로써 완전 自由化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2. 漁業構造改善과 水産政策의 方向

UR協定이 實施되기까지는 앞으로 10年の 유예기간이 있다. 그 기간에 開放과 自由化라는 새로운 國際貿易秩序 속에서 우리나라 水産業의 存立과 成長·發展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할 基本的인 政策 方向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漁業의 構造改善과 競爭力強化

産業政策은 産業發展에 따라 발생하는 諸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公的介入의 總칭이라 할 수 있다. 公的介入의 형태와 구체적인 방법은 産業의 發展段階과 問題에 따라 실로 다양하다. 公的介入의 형태는 政府의 직접적인 産業活動의 수행을 한편의 極으로 본다면 다른 한편에는 産業活動에 영향을 미치는 情報의 제공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兩者의 中間에 政府에 의한 産業活動의 規制·調整·誘導·助成등 각종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規制·調整·誘導·助成등은 産業活動 그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와 産業活動의 環境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資本主義經濟의 近代化過程은 工業의 發展을 의미하는 동시에 農水産業의 상대적 劣勢를 결과하게 된다는 것은 역사적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다¹¹⁾. 이상과 같이 工業化에 따라 農水産業과 工業은 不均衡의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國民經濟의 發展을 저해하게 된다. 그러나 經濟發展은 工業化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農水産業은 工業化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과대한 부담을 지는 동시에 과중한 희생을 강요당하게 된다.

- ① 工業化에 필요한 勞動力을 비롯한 生産要素를 공급하게 된다.
- ② 工業勞動者의 食糧을 低位의 政策價格에 의해서 공급하여야 한다.
- ③ 工業化의 初期段階에는 工業原料까지 공급해야 한다.
- ④ 工業化過程에서 原料와 機械輸入을 위하여 필수적인 外貨는 農水産物의 輸出에 의해서 충당된다.
- ⑤ 工業化에 수반되는 政府의 財政收入도 農水産業에 대한 課稅收入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 ⑥ 工業製品의 國內市場을 확대시키게 된다.

이상과 같이 工業化에 있어서 農水産業의 기여도는 실로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産業의 特殊性和 결합하여 農水産業의 상대적 劣勢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다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水産政策은 이상과 같이 피폐되고 政策的으로 소외된 水産業의 保護와 漁村振興을 통하여 漁業을 産業으로서 발전시키고자하는 政策인 것이다. 따라서 水産政策은 漁業生産力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漁業制度의 改善, 漁業經營의 近代化와 共同化의 促進, 水産業協同組合의 效率의 運營과 組織機構의 改編, 水産金融의 원활한 공급, 漁業災害의 보상, 水産物價格의 유지 및 안정, 生産性의 향상을 위한 資源造成과 漁業構造의 改善등의 각종 政策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넓은 의미의 水産政策의 영역은 좁은 의미의 生産政策만이 아니라 流通政策 및 分配政策, 價格政策과 漁場의 개량과 보전, 生産과 流通의 하부구조등 漁業의 基盤施設, 漁業制度등 漁業秩序政策, 水産資源保全政策, 漁業構造政策등의 각 분야가 있다. 이 밖에 調査·研究·技術의 改良과 教育등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다. 여기에 UR협상이 타결된 현재 각분야별 대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인가를 개관해 보기로 한다.

11) 이 점에 관해서 코린·크라크는 [經濟進歩의 諸條件]에서 실증하고 있다. Colin Grant Clark,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1940, 2ed.,

(1) 生産政策

漁業生産의 증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漁場의 外延의 擴大, 養殖漁業의 開發, 生産手段의 증가 등에 의존하여 왔다. 62년부터 强행된 經濟計劃의 일환으로서 작성된 水産振興計劃은 높은 增産政策에 의하여 일관되었다. 遠洋漁業의 비약적 발전은 그러한 배경에 의해서 추진된 결과이다. 그러나 1982年 4月 30日 遠洋法條約이 채택되고 200海里時代가 개막됨에 따라 韓國遠洋漁業의 발전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물론 77년부터 이미 沿岸國은 200海里이내의 資源에 대해서 排他的 經濟水域 또는 어떠한 형태의 규제방법을 도입하고 있었다. 82年 이후 지금까지 近12年이 경과되었으나 沿岸國의 규제는 강화일로에 있을 뿐아니라 公海漁業에 대한 규제마저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流刺網漁業이 北洋에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것이다. 앞으로 遠洋漁業의 유지 내지 진출을 위해서는 증대되는 入漁料 이외에 沿岸國과의 多角的인 經濟·技術·科學·協力과 더불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나라 沿岸漁場과 近海漁場의 開發과 合理的인 利用·管理問題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2) 水産資源의 造成

이상과 같이 漁場의 협소화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沿近海漁場에 대한 資源造成問題는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漁業生産活動은 水産資源의 보전과 양립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계속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水産業은 資源에 대한 배려가 희박한 채 漁場掠奪的인 生産强化에만 일관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漁場生産力의 저하현상을 가져 오게 되었다. 앞으로 資源의 적극적인 造成과 管理가 수반되지 않는 漁場利用과 生産力의 증대는 기대할 수 없고 더구나 規模의 經濟에 의한 國際競爭力의 강화, 比較優位의 달성과 유지는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水産業의 유지·발전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3) 漁業制度의 整備와 改善

漁業制度는 개별적인 漁業活動과 全體로서의 水産業이라는 産業活動을 一定한 테두리와 體系에 의해서 秩序지우게 하는 政策이다. 그러므로 漁場의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利用과 管理는 물론 生産性を 향상시킴으로써 競爭力이 있는 漁業으로 育成하는대는 資源造成을 기본으로 하는 漁場의 科學的인 利用·管理를 위한 漁業秩序政策이 중요하게 된다.

(4) 水産業協同組合의 組織과 機構 및 運營의 改善

이 문제는 漁業制度, 漁業秩序에 포함되지만 水協의 運營이 개별적으로는 漁民의 生産과 生活에는 물론 크게는 水産業全體의 발전과 再生産活動에 적극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작용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水協이 발족한지 32年이 되었다. 水協의 經營은 漁民을 組合員으로 하고 主體로 하여 水協이 行하는 事業은 組合員에게 최대의 奉仕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水協經營은 水協의 意義와

目的, 主體(組合員)의 本質에 철저하게 밀착된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活動方向이 결정되어야 한다. 水協의 任職員은 이 때 水協 그 자체의 機能과 役割을 보다 充實히 수행하기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그러한 水協이 어느새 主體로서의 組合員에 대한 봉사를 외면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任職員을 위한 水協으로 변신·전락한 감이 짙다. 앞으로 開放과 치열한 國際競爭社會에서 水産業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分野에서 보다 組織的인 對應이 불가피하다. 이와같이 급격하게 변화하며 전진하는 國際社會에 있어서의 水協經營에는 成長과 發展의 論理와 理論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視野를 世界的으로 넓혀서 各國과 韓國의 많은 經驗과 實踐의 結果를 취합하여 반영하고 건설하여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農協會長의 不正은 權限은 지나친 집중에서 오는 權限의 남용이라 할 것이나 그런 의미에서 權限의 分散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農水蓄協의 信用事業을 분리하여 二元體系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組合員이 쉽게 接近할 수 있고 信用社會의 收益金이 다른 經濟事業에 彈力的인 지원이 될 수 있는 組合員의 生産活動과 組織活動에 밀착된 關係와 位置에 있어야 할 것이다.

(5) 漁業構造의 改善

우리나라 漁業은 經營規模別로는 비교적 大規模漁業과 中小漁業, 漁家漁業으로 구성되고 또한 漁業別로는 沿岸漁業, 養殖漁業, 近海漁業, 遠洋漁業의 生産構造를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業種別로는 다양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되는 것은 經營規模가 전반적으로 濶細하다는 것이다. 특히 經營體數나 從事者數로 보아서 압도적 多數를 이루는 것은 沿岸漁業과 中小漁業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沿岸에 광범하게 산재하고 있는 이들 沿岸漁業과 近海 中小漁業 및 養殖漁業이 바로 韓國漁業의 大종이라 할 수 있고 韓國漁業의 構造的 脆弱點은 바로 이러한 漁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韓國漁業의 競爭力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곧 이들 漁業의 競爭力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濶細經營이 지배적인 沿岸漁業과 經營이 不安定한 中小漁業의 生産性을 향상시켜 競爭力을 증대시키는 것이 急선무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것을 위한 漁業의 構造改善에는 生産 및 經營構造의 改善, 流通構造의 改善 등을 들 수 있다. 生産構造의 개선은 商品價値가 높은 中高級魚貝類의 生産增大와 安定的인 공급을 위한 生産構造의 개편을 의미하고 經營構造의 개선은 生産性的 향상과 均衡의 所得增大가 가능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經營規模의 확대를 의미한다. 國際競爭力¹²⁾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商品의 外國市場에의 浸透力과 外國상품에 대한 國內市場의 防禦力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水産物이 外國市場에 침투하여 市場을 확대하고 國內市場에 있어서 外國水産物의 침투를 막고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水産物의 品質과 價格이 주요 조건이 된다. 따라서 品質이 좋은 水産物을 저렴한 價格으로 충분하게 供給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生産構造가 개선되어야 하고

12) 國際競爭力 要因에는 經濟的要因과 非經濟的要因이 있다. 經濟的要因에는 商品的要因과 非商品的要因으로 구분되며 전자에는 商品에 內在된 要因(體化된 要因)과 商品에 外在한 要因(직접관련된 要因)이 있다. 內在된 要因에는 價格과 品質, 디자인, 포장등의 要因이 있고 外在한 要因에는 마케팅, 각종 계약조건, 광고, 애프터서비스등의 要因이 있다. 非商品的要因에는 國內物價, 換率, 각종 지원제도, 기술개발력(신규상품개발가능성), 國際市場變化에 적용할 수 있는 전환능력등이 있다. 그리고 非經濟的要因에는 通商條約 및 協定, 政策的 配慮(輸出入에 관한 特惠), 求價貿易 기타, 資本 및 技術의 이전에 따른 부대조건등이다.

生産성이 향상되어야 하며 따라서 能率의인 漁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經營構造의 개선은 規模의 經濟를 실현하여 生産效率을 높이고 費用을 절감하는 효과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流通構造의 개선은 現行 流通構造하에도 中間商人의 槓杆가 여전히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大資本이 여기에 介入하여 出荷調節에 의한 價格操作을 일삼음으로써 生産者와 消費者의 양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여기에는 直出荷와 直販制度를 확대하고 流通資金도 확대공급하여 生産者團體의 活動을 촉진시켜야 한다.

要件대 沿近海漁業의 構造改善은 生産성이 높은 漁業에로의 전환과 더불어 生産基盤의 정비, 能率의인 漁具·漁法의 도입, 共同施設, 共同加工工場의 설립 등을 통하여 商品의 다양화, 고급화까지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 構造改善資金과 流通金融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中小漁業은 一經營一漁船에서 經營規模를 漁業別로 적정규모로 육성 또는 유도하기 위하여 低利資金과 稅制上的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企業合併, 集團操業등 生産의 組織化에 의해서 生産能率과 經費節減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6) 養殖漁業의 擴大

水産業의 選擇的 擴大라는 것은 收益성이 높고 장차 需要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高級魚貝類의 養殖漁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養殖技術의 발달과 더불어 漁場의 확대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人工採苗施設의 확대, 養殖技術의 개발, 대규모의 海洋土木工事 등으로 生産增大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7) 資源造成과 栽培漁業의 育成

沿近海漁場의 生産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은 현재의 漁場生産力水準으로서는 生産성이 높고 競爭力이 있는 漁業에로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水産業의 事業으로서의 成立 여부는 資源量의 密度 또는 資源의 存在量 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資源造成問題는 제1차적인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대규모의 人工採苗施設에 의해서 人工採苗와 人工孵卵 人爲的인 生育·稚魚放流등의 과학적으로 管理된 시스템에 의해서 漁場生産力の 증대 및 유지가 필요불가결한 요건이 된다. 그러므로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의 投資에 의해서 魚礁投入, 栽培漁業의 추진등과 더불어 資源의 적극적인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生産性的 향상이 없는 市場開放과 自由化는 우리나라 水産業의 存立基盤을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8) 資源管理型漁業의 展開

우리나라 漁業의 歷史는 일관하여 漁場掠奪의 漁業의 계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全世界의 漁業의 歷史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一方的인 掠奪漁業에서 戰後 특히 海洋法會議가 시작된 이후부터 資源管理型漁業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資源管理型漁業에 대한 概念定義는 반드시 定立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資源의 合理的 利用과 生産要素의 效率的인 配分과 利用을 동시에 달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상

태를 의미하고 있다. 물론 당사국의 社會經濟的 條件이 고려된다는 것이 포함된다.

이와같이 漁業管理는 漁業生産活動을 적절하게 행하기 위한 諸手段 및 이에 관련된 理論과 政策體系이다. 水産資源은 전형적으로 自律更新的 資源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고 科學的으로 管理·利用한다는 것이 水産資源의 영속적 利用을 보장하는 것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漁業管理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資源의 科學的 管理와 그 利用인 것이다. 그것은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 漁場의 社會的 性格과 經營의 私的 性格은 필연적으로 資源의 과잉이용과 經濟的 浪費를 조장하게 되므로 여기에 自由參入漁業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漁業管理가 등장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漁業은 끊임없는 生産力의 발전을 매개로 한 資源濫獲型 또는 資源掠奪型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資源의 動態를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漁業의 發展방향은 天然資源을 그대로 利用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광범한 增殖·養殖의 전개등 資源의 유지·증대라고 하는 人爲的·計劃的·科學的 手段을 강구하여 資源을 적정수준으로 培養하면서 利用하는 동시에 漁業에 投入된 生産要素의 效率性이 他産業에 投入된 生産要素의 效率性과 균형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문제가 아울러 중시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社會全體의으로 보아서 稀少資源의 合理的 配分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漁業管理의 필요성에 대한 論據는 自由放任經濟下에 있어서는 漁獲努力의 투입이 最大持續的 生産量인 MSY점을 초과하여 진행되고¹³⁾ 그것이 資源의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漁獲努力 즉 資本과 勞動의 과잉투입을 결과하는 사태를 빚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러한 현상은 개별기업으로서의 採算性의 악화를 의미하고 社會·國家的으로는 資源配分이 不合理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經濟的 效率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¹⁴⁾.

(9) 構造改善事業과 金融支援策

市場開放과 무역자유화에 의해서 外國의 저렴한 水産物의 國內유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규모적인 資源造成, 栽培漁業, 漁業構造改善에 의한 生産性의 향상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¹⁵⁾.

이러한 諸事業과 漁業의 近代化, 技術開發, 構造改善事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水産金融政策이 필요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漁業의 競爭力의 강화여부는 대대적인 投資의 확대에 기대할 수 밖에 없으나, 그러한 投資는 바로 水産金融政策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¹⁶⁾.

VI. 結 語

UR이 妥結된 현재 韓國水産業에 부하된 과제는 水産業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競爭力있는 産業

13) 朴九秉, 水産資源의 合理的 利用管理에 관한 經濟學的研究. 釜山水大論文集, 第22輯, 1979, p.9.

14) 朴九秉, 同書, pp.9~11.

15) 金仁台, 漁業再編成의 基本問題에 관한 研究. - 그 構想과 類型 -, 釜山水大論文集, 第32輯, 1984, p.44.

16) 金仁台, 同書, p.41.

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水産業이 外國의 그것에 비해서 比較劣位에 있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生産性を 향상시키고 競爭力이 있는 漁業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構造改善事業을 중심으로 하여 資源造成과 栽培漁業등에 의해서 漁場生産力の 지속적 증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일련의 關聯政策이 導入·執行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投資의 불가피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水産金融政策의 組織的 體系的 展開가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UR協定에 의한 猶豫期間이 위에서 지적한 방대한 事業을 전개하여 生産성이 향상되고 競爭的인 漁業으로 성장하기 까지는는 불충하지만 지금은 그 기간의 長短을 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다만 計劃하고 實施하여 生産성이 높은 漁業에로의 育成과 發展을 촉구하는 民族的 意志와 政策的 實踐이 있을 뿐이다.

參考文獻

1. 金仁台, 朴九秉, 水産經濟論, 1963.
2. 朴寅泰, 海洋資源論, 1984.
3. 長谷川彰, 海洋管理, 1985.
4. 清光照夫, 岩崎壽男, 水産政策論, 1986.
5. 佐佐木忠義 監修, 海洋開發, 水産資源の開發, 1970.
6. 韓國農村經濟研究院, 沿近海漁業의 發展方向, 1981.
7. " , 沿近海漁場牧場化計劃, 1987.
8. 水産廳, 水産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1992, 1993.
9. " , 漁業協力協定集, 1981.
10. 金仁台, 韓國漁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研究, 水大論文集, 1969.
11. " , 韓國水産業協同組合의 育成方案, 水大論文集, 1971.
12. " , UR協商以後의 韓國水産業의 對應方案, 水産研究, 第5號, 1991.
13. " , GATT體制의 意義와 그 對應方法, 水産研究, 第5號, 1991.
14. " , 水産政策의 展開過程(二)(三), 水大論文集, 1979, 1982, 1983.
15. " , 漁業再編成의 基本問題에 관한 研究, 水大論文集, 1979.
16. 朴九秉, 水産資源의 合理的利用管理에 관한 經濟學的 研究, 水大論文集, 1979.
17. 外務部, 世界經濟秩序와 通商外交의 方向, 1991.
18. 農水産部, 農業通商消息, 21, 24, 1992.
19. " , " , 26, 27, 1993.
20. " , " , 28, "
21. " , " , 29, "
22. " , " , 30, "
23. " , " , 31, "
24. " , " , 32, "
25. " , " , 36, "
26. " , " , 37, "

The Direction of the Fisheries Policy in Korea after the End of the Uruguay Round of Global Trade Talks

Kim, Kyoung - Ho

Summery

Because of the radical changes in the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circumstances Korean fisheries is confronted with difficulties. Along the end of the UR marine products of other nations are rushing into Korea. Also migration of labor to other industries and rise of wage level in Korean fisheries deteriorate managerial conditions. But in Korea which has little natural resources fisheries is still more important. That is ① creating job opportunities ② increase of income ③ supply of foodstuffs and animal protein ④ acquisition of foreign currency ⑤ enlargement of domestic market for industrial products ⑥ development of other interrelated industries ⑦ rational use of domestic resources ⑧ diversification of population and production activities ⑨ contribution to balanced growth of national economy by the developing regional economy.

These roles of fisheries in national economy mentioned above are to be excuted forward.

In spite of the radical change in the economic circumstances at the end of the UR fisheries is crucial in Korea as a industry. For this our fisheries is to be made to compete with foreign fisheries. Through the cheap price and high quality our fisheries must be came to compete with foreign fisheries and meet the people's needs for marine products.

For thi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high productivity and competitive power. Now with the exception of a portion of the deep - sea fishing, our fisheries is generally paltry. Especially inshore fishery which is the main stock in our fisheries is very paltry and so productivity and competitive power are very low. So to develop our fisheries which has a comparative disadvantage active polices that follows below are to be promoted on a large scale.

- ① improvement of structure
- ② augmentation of productivity in fishing ground by making fisheries resources
- ③ enlargement of financial and monetary assistance
- ④ effective administ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 union
- ⑤ activation of R&D etc

수산경영론집

These polices which need to be scientific and comprehensive are very valuable. Especially without making fishieries resources we cannot expect economy of scale, promotion of productivity and development of fisheries. And we do also endeavour to gather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investigation about fisheries domestic and foreign and do ceaselessly put these to practical use systimatically.